

2025학년도 성인지교육 시행방안 수립

1. 관련

- 가.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(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) 3항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
- 나. 학사운영팀(서울)-2582(2024.02.14), 2025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보고

2. 이수 기준

구분	주요원칙 및 내용		비고
이수 대상	비사범계 교직과정	2회 이상: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적용	
	2021학년도 입학자부터	4회 이상: 3년을 초과하는 교육양성 과정 적용	
	재학생	2회 이상: 2021.02.09 기준 잔여 학기가 3학기 이상인 재학생	
	편입학/재입학/복학자	동일 학년의 입학년도 기준 적용	학적 변동자

3. 운영 방안

- 가. 교원자격검정편람 기준에 따라 4차시 교육내용을 모두 이수해야 1회로 인정되며, 사범 대학 재학생은 총 4회 이상, 비사범계 교직과정 학생은 총 2회 이상를 이수해야 함
- 나. 4회 이수 조건 중 **1회 이상은 대면 특강** 방식으로 **이수**해야 함

구분	정규교과목 특강	교육실습 맞춤형	별도특강
	신입생 맞춤형		
교과목 및 개설학기	미래교사와의사소통 (1학기)	교육봉사활동1, 교육봉사활동2, 학교현장실습 (1학기, 2학기)	- (1학기, 2학기)
대상학년	1학년	- 교육봉사활동1,2 : 1~4학년 - 학교현장실습 : 3~4학년	1~4학년 중 해당연도 미이수자
이수방식	온라인(e-campus) 특강	대면 특강	온라인(e-campus) 특강
비고	※ 강의계획서에 성인지교육 일정 안내	※ 교육실습 활동에 따른 특화된 내용 반영하여 진행	※ 공통 내용 반영한 내용으로 진행
인정기준	교과목 패스(P)와 영상 4차시 모두 이수한 경우	4차시 모두 100% 출결 확인 시	영상 4차시 모두 이수한 경우

4. 교육 내용

- 가. 프로그램 유형별 특화 내용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함
- 나. 외부 전문가 특강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이수내용 (온라인)	1차시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2차시 가정·학교·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차시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방법 및 교육 내용 4차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/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※ 4개 차시 모두를 이수해야 1회 교육 인정
이수내용 (대면)	1차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업·생활지도 고려 사항 2차시 양성 평등한 교실 운영을 위한 학생 지도 시 교과 지도에서 고려할 사항 3차시 성인지적 관점 수업 예시 4차시 학교에서 성희롱·성폭력 사안 발생 시 ※ 4개 차시 모두를 이수해야 1회 교육 인정

5. 이수 대상

구분		교과목명	학기	대상
정규교과목 특강	신입생 맞춤형	미래교사와의사소통	1	신·편입생 첫 학기 등록 학생
	학과 맞춤형	미래교사와학교현장	2	1학기 이수자 제외
교육실습 맞춤형		교육봉사활동1 교육봉사활동2 학교현장실습	1,2	직전 학기 이수자 제외
별도특강		-	1,2	해당 학기 및 직전학기 중복 이수자는 제외 (단, 졸업예정자/조기졸업 희망자에 한하여 이수 가능)

※ 4개 프로그램을 하나씩 이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(편입생/복학생/재입학생/조기 졸업예정자 등)는 '성인지 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'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함.

6. 주의사항

가. 온라인 특강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며, 문자/샘물 PUSH로 안내 예정임

나. 대면 특강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 내 참석 여부를 신청해야 함

다. 대상자 문자/샘물 PUSH 안내함

라. 온라인 특강은 4차시 모두 영상 진행률이 100%로 되어 있어야 인정됨

※ <미래교사와의사소통>교과목 수강생은 수업이 'P' 되어야 교육 이수 횟수 인정

마. 대면 특강은 4차시 모두 출석 확인 예정이며, 특강 시작 후 10분 이상 지각하거나 특강 도중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처리함

바. 반드시 본인 이수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이수 기준 횟수에 미달하는 경우 '교직자격증 취득 불가' 처리가 될 수 있음

7. 특기사항: 2025학년도 1학기부터는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'성인지 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'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(※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 필람 주요 개정 내용에 근거함)